

김영자 간호원 무죄 판결

대한간호협회 총무 윤 수 복

—1970년 3월 9일—

지난 3월 9일 오전 10시 정자 부산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는 전국 간호원과 매스컴의 주시 속에서 김영자 간호원의 무죄 판결이 내렸다.

이날 윤석명 판사는 김영자 간호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화단에 쫓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서 1969년 7월 17일부터 1970년 3월 9일까지 만 7개월 20일간을 끌어온 김영자 간호원의 사건은 종말을 지었고 따라서 의사 지시에 의한 간호원의 주사행위가 합법적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한간호”지에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는 1969년 9월 2일 보사부장관으로부터 “간호원이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행한 주사등의 행위는 등 주사등의 행위 자체에 간호원의 과실이 없는 한 합법적이다”라는 공문을 받고 주사거부를 철회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계속해오면서 하루 속히 김영자 간호원이 무죄 석방되기를 고대하였었다.

그러나 담당 검사, 판사등의 이등발령으로 결심공판이 지연되어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1970년 2월 23일 김기수 검사로부터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주무부장관의 법해석과 전문가들의 증명을 고려치 않고 내려진 유죄판결에 우리 협회와 회원들은 다시 한번 분개했으며, 협회에서는 곧 이사회, 서울시내 간호원장회, 서울시내 보건소 간호원책임자들의 합석회의를 열고 그 대책을 논의한 끝에 “간호행위의 법적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월 26일)

이에 특별위원회에서는 간호원의 간호행위가 확고한 법적 보장을 받을 때까지 3월 2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의 간호원들은 간호업무중 일체의 주사행위를 거부키로 하고 이를 일간지에 성명하는 (한국일보 2. 28) 한편, 이트 인한 환자의 피해를 덜기 위해 병원협회, 각 병원장, 각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의뢰하는 공문을 내고 일제히 주사거부를 실시했다.

이어 특별위원들은 보사부장관을 직접 방문코 주사를 놓지 못하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하루 속히 법적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회법사위원장과 보사위원장을 방문하여 상세히 보고하면서 간호원의 간호업무가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법무부장관에게도

① 면허간호원이 의사 처방에 의한 주사행위를 법적 보장 아래서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시급히 공포해 줄 것,

② 의사의 처방에 의한 주사등 투약을 간호원이 실시한 경우 실시한 내용과 그 방법에 있어서 과오가 없을 때 그 투약의 결과에 따르는 책임 소재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이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무총리에게는 사실을 서면 보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3월 5일로 예정되었던 언도공판이 3월 9일로 연기되어 초조하던 우리를 더욱 당황케 했으나 결국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과 사회여론의 흐름을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서 김영자 간호원은 무죄 석방되고 간호원의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해석이 판에로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의료법 안에 간호업무의 법적보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법조항을 삽입시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인 관심이 간호원들에게 많이 기울어져가고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권익을 찾기 위해 일치단결하는 만큼 의무 수행에도 열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간호원”이란 인식을 주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산 지방법원 판결

사 건 69고 12586 의료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김영자 간호원

1940년 3월 5일생

주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72

본적 같은구 감전동 625

검 사 김기수

변호인 변호사 : 김유곤, 서운학, 이상익,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768 부산진 보건소 근무 간호원으로서 등 보건소 결핵관리실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1) 1969. 5. 23. 11:00계 위 부산진 보건소 결핵관리실에서 주치의사의 지시 감독없이 같은 구 천포 1동 695의 26, 폐결핵 환자 김정혜(여 4살)의 등부에 스트렙트 마이신 0.5씨.씨를 시주하여서 의료업무를 행하고

(2) 그무렵 그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김정혜에게 스트렙트 마이신을 주사함에 있어서 그의 좌측폐가 결핵균에 의해 완전히 침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그의 어머니 박천수도 그가 마침 음식물에 체하여 아침밥을 먹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어서 그의 신체가 극도로 쇠약하였음을 쉽게 알수 있었으므로 스트렙트마이신을 시주하였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런 경우 피고인으로서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 감독아래 시주해야 함은 물론 만일 주사후에 부작용이 생기면 세파핀, 마구물등을 시주하여 경련을 진압시키고 에페드링, 강심제 등을 주사하여 혈압유지에 노력하는 등 사후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 방지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의 지시 감독없이 단연히 그의 등부에 스트렙트 마이신 0.5씨.씨를 시주하므로써 그로 하여금 눈을 치켜뜨고 사지를 떨게하는 등 부작용

용을 일으키게 하고도 이에 대해 그의 경련을 진압시키는 등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부작용을 유인으로하는 폐결핵으로 인하여 그날 25일 16:00계 중구 내청동 메리놀 병원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함에 있으므로 살펴 본다.

(1) 항에 대하여

주사행위가 의료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주사에는 정맥주사와 일반주사 즉 근육, 피하주사의 2종이 있는 바 간호원은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함을 그업으로 하여 의사의 지시나 처방이 있으면 그 기간동안은 환자에게 질환상 크게 변화가 없고 또 별도 지시나 처방변경이 없는 이상 그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일반주사를 행함은 곧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이용된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 및 증인 박보란의 경찰 이해 범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증인 박천수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의사 박천근의 경찰에서의 진술, 기록(65장)에 대한 결핵환자 관리기록표의 기재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63. 7. 14 보사부 장관으로부터 간호원 면허(제 7971호)를 받아 경남 창원군 양산군 및 부산동구 각 보건소를 거쳐 1968. 1. 1부터 부산, 부산진구 보건소 간호원으로 종사해 오던중 공숫장 기재 임시 장소에서 본건 피해자 김정혜의 문부에 스트랩트 마이신 0.5씨.씨를 주사한 사실과 이는 등 보건소 주치의사인 공소의 박선근이가 1969. 3. 27부터 이 환자의 질환을 세밀히 진찰한 후 그해 4. 24 폐결핵으로 단정하고 그날 스트랩트 마이신 0.5그램 등을 1주일에 두번씩, 그리고 아이나 150미리그램을 매일 투여하라는 처방을 내고 스트랩트 마이신 5그램과 아이나 53그램을 환자측에 교부하여 그해 5월7일부터 20일까지 사이에 전후 다섯차례에 걸쳐 등 보건소 결핵관리실 근무 간호원보 공소의 박보란에 의해 스트랩트마이신 0.5그램씩을 주사받아 오면서 주치의사의 별다른 지시나 처방변경 없이 그달 23일에도 위 박보란이가 빼주는 이 환자에 대한 처방전에 따라 피고인이 스트랩트마이신 0.5그램을 주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2) 항에 관하여

간호업무에 당하는 자가 환자에게 주사후 부작용 증세가 발견될 경우 공숫장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며 의사 소령국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시체 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후 이 환자가 공숫장 기재 임시 장소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나 앞서 든 여러 증거에다 증인 김종철의 법정에서의 진술, 감정인 정창수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환자는 생후 4살된 여아로서 등 보건소 의사 반선근은 1969. 3. 27 초진때 “2년간 계속된 호흡곤란과 천식”이란 환자측의 주 호소에 따라 그에 대한 방패의 엑스선 촬영과 결핵에 대한 피부반응 실시등 세밀한 진찰을 거쳐 그해 4. 24 폐결핵으로 판단하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처방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박보란에 의하여 다섯차례나 스트랩트 마이신 0.5그램씩을 주사해 왔으나 별다른 이상이나 주치 의사의 처방 변경이 없었던 중 그 의사가 그해 5. 21부터 휴가고 출근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 환자에게 주사한 당일에도 등 보건소의 다른 의사와 간호원들은 순회진료차 나가고 등보건소에는 피고인과 간호원 박보란만이 결핵관리실에 남아 있었는데 그날 1:00계 이 환자의 어머니 박천수가 그를 업고 와서 창구쪽에서 들떠든 수십명의 환자 카드(처방전)를 바빠 정리하던 박보란을 밖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아이가 체해서 아침밥도 안먹고 아픈데 결핵주사를 놓아도 좋으나?” 묻는데 “괜찮을 거라” 대답하는 것을 그곳에서 5-6미터 떨어져 여러 사람에게 주사하던 피고인은 알아들지 못한채 박보란이가 넘겨주는 카드에 적힌대로 이 환자의 문부에 스트랩트 마이신 0.5그램을 주사하고 나서 안겨나가고 피고인은 계속 단 환자들에게 주사하고 있었는데 그 약 5-10분 후 그 옆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박천수가 이 환자에게 공숫장에 적힌바와 같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남을 보고 놀래어 박보란에게 달려가 역시 창문으로 넘어다 보며 “아이가 잠적잠적 놀란다”는 말을 하자 박보란으로선 당시 등 보건소에 의사가 없어서 어찌 처치할 방도를 몰라 “근처 병원으로 가 보라”는 말로 돌려 보냈는데 이 사실 또한 피고인으로선 다만 밖에서 떠드는 소리로만 들렸을

뿐만 그 내용을 들었으며 그 뒤 박 천수는 이 환자를 집에 데려다 안정시켰으나 약 1시간 후 또 사지를 떨고 하므로 그 다음 날 01:30분께 부산시립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을 받은 다음 그 병원에서 자신이 없다하여 그날 09:00께 메리놀 병원에 입원시켰던바 담당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나타났다는 고열 역초와 구토, 의식불명 및 경련"이란 환자측의 주호소에 따라 뇌척수액에 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환을 첫째 뇌막염 둘째 척수염 일것이란 진단 아래 일반 대증치료로서 생리적 식염수 포도당 헤열제 및 강심제 등을, 항생제로서 스트렙트마이신 아이나 및 페니시링 등을, 홀몬과 비타민 오엘트서 푸레드니소론(부신피질 홀몬제제)과 비타민제 등을 각 투여하였다가 그 다음날 16:20께 사망에 이른 사실과 피고인이 당일(5. 23) 주사한 환자수가 투여 200여명이나 되었지만 이 환자외에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감정인 정창수가 1. 의사 소병국 작성의 감정서 2. 메리놀 병원의 진료일지 3. 의사 변회탁작성의 사망진단서 4. 의사 박선근 작성의 처방전 5. 공숫장 사본등을 자료로 삼아 행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스트렙트 마이신 약품의 가장 중요한 특성효과는 제 8신경을 침해하므로써 나타내는 운동실조 정력장애 현훈(멀미) 및 이명(귀에 소리나는 것)이고 그밖에 주로 과민성 반응이라 볼 수 있는 피부발진 호산구 증가증 발열 병감(불쾌감) 관절통 및 주입부의 동통들로서 이 환자가 5. 23 주사맞고 난 뒤에 나타났다는 눈을 치켜뜨고 힘끔 힘끔하며 사지를 떨것 같은 증상은 차라리 신경증상으로 볼에 타당하고 스트렙트 마이신 부작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며 스트렙트 마이신의 약 0.5그램이 결코 과다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스트렙트 마이신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부작용은 일시적이므로 오늘날 결핵성 감염을 비롯하여 여러 감염성 질환에 의사들은 안심하고 많이 이용하는 실정이란 것이다.

요컨대 본건 피해자의 폐결핵증은 좌폐전염에 걸쳐 있어서 중증이라 볼 수 있으나 우폐가 비교적 건강하였을 것이라 추정되므로 좌폐의 결핵단으로 사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 환자의 치명적 병적 과정은 그 본래를 밝히지 못한 중추신경의 질환 특히 뇌막을 침범하는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감염으로서 이 환자의 사망원인은 주차적으로 결핵성 뇌막염, 부차적으로 폐결핵증이라 하며 당원이 믿지 않는 피고인의 검찰, 증인 소병국 정병호들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부분 의사 소병국 작성의 시체부검 감정서 기재부분 의에 달리 이 환자의 사망원인이 피고인의 본건 스트렙트 마이신 주사에 의한 부작용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도 없다. 이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각 공소 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좇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1970. 3. 9

판 사 운 석 명

변 호 취 의 서

피고인 김 영 자

위자에 대한 귀원 69 고 12586호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변론 하나이다.

1970

위변호인 : 변호사 서운락

1. 피고인 김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영자는 부산진 보건소 근무 간호원으로서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1969. 5. 23, 11:00, 위 보건소 결핵관리실에서 폐결핵 환자 김정혜 4세의 등부에 스트렙트 마이싱 0.5 씨씨를 시주하여서 의료업무를 행하고,

2) 동일시 동소에서 위자의 폐가 결핵균으로 완전 침식되었고 등인의 어머니 박천수는 위자가 음식물로 체하였다는 사실로 호소한 위에 그 신체가 극도로 쇠약하고 있어 스트렙트 마이싱의 시주를 耐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의 구체적인 지시없이 이와같이 스트렙트 마이싱을 시주하여서 위 자로 하여금 그 부작용을 유인으로 하는 폐결핵으로 동월 24일, 16:00 메 리놀 병원에서 사망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먼저 검사의 공소장을 자세히 검토하면 공소장의 기재사실 자체에서 矛盾撞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 할 도리가 없습니다.

2.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간호원은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업자이고 그 임무는 위 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의료상의 간호 또는 진료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인니다.

과연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간호원이 의사의 장기처방 또는 처방에 의하여 투약, 塗藥 또는 시주하는 행위가 위법 제7조의 임무를 벗어난 행위가 아니면 그 범위내의 진료의 보조행위에 불과할 것이냐 하는데에 이 전 공소의 유지여부가 歸着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3. 이에 나타난 각종 증거를 더듬어 볼때 검사기록 제65丁에 편철되어 있는 결핵환자 관리기특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참고인 박선근에 대한 진술로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김정혜에 대하여는 1969. 3. 27, 처음으로 진찰한 결과 결핵환자로 판명되어 스트렙트 마이싱 0.5씨씨를 격일 시주 하도록 처방이 되어 있고 그 처방에 따라서 4. 24과 5. 7에 위와 같이 시주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사고를 일으킨 5. 23까지 아무런 처방상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신청하였다가 그 채택여부가 보류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와 스웨덴 아동 구호협회 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의하면 의료품은 위 구호협회에서, 진료는 부산시에서 각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중 결핵환자의 요양은 장기간에 당한 계속치료를 요하는 까닭에 6개월 마다 처방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하는 바 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전 시주는 주치의인 박선근의 구체적인 처방에 의하여 스트렙트 마이싱을 시주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부산시장에 대한 조침문서인 1969. 8. 30字 의무 1400~25323 의료행위에 대한 질의회신에 의하면 간호원은 의사의 장기처방에 따라 투약 또는 주사를 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 제7조 소정의 의료보조행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간호학 제20장 비경구적 투약장에 의하면 그 235면에 대개 “정맥 주사는 의사의 직책이고 그 준비와 일반주사는 간호원의 책임이다. 만일 간호원이 정맥주사를 해야 할 경우를 당하면 이것은 의사의 책임아래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간호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의사의 책임아래 시행하는 정맥주사나 간호원의 독자적 인 책임하에 시행하는 정맥주사의 준비와 일반주사를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건 스트렙트 마이싱의 주사가 정맥주사 아닌 일반주사에 속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여지가 없다고 하겠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건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이 건 스트렙트 마이싱의 주사는 간호원의 임무의 범위를 벗어난 무 면허자의 의료행위다 하여 의료법 제25조를 擬律하면서 일방 그 제2사실에 있어서는 이 건 시주로 인한 위 김정혜의 사망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向擬하고 있습니다.

위 김정혜의 사인과 이 건 시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유무여부는 거시 뒤로 미루고 만일 피고인의 이 건 시주가 의료법 위반이 된다면 시주는 피고인 김영자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치사 또는 중 과실 치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없고 그와 반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이 된다면 이 건 시주는 피고인 김영자의 정당한 업무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擬律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검사의 공소사실자체에 모순당착이 있다는 것도 즉 이것을 두고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원의 주사행위에 대한 관례를 살펴 보건데 우리나라에 尙今 이에 대한 별다른 관례가 없으나 일본의 관례에 의하면 1952. 6. 13 名古屋 高等 재판소에서는 간호원이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정맥주사를 하는 것은 형법 제211조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判示하고 있고 1953. 12. 22 最高 재판소에서는 간호원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맥주사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211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간호원이 정맥주사행위까지도 정당한 업무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맥주사까지는 그와 같이 해석하고 있거든 하물며 일반주사에 있어서는 새삼스럽게 논쟁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영자의 이 건 시주는 의료법 제7조 소정의 범위내에 속하는 정당한 업무행위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4. 다음으로 이 건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을 살펴 보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이건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는

1) 의사 蘇秉國 작성의 감정서중 本屍는 스트렙트 마이싱을 주사하기 전에 제한것 같아서 업어서 간다는 것은 생전의 건강상태가 불량함을 뜻하는 것이고 5. 23 주사를 맞고 나타난 증상 즉 눈을 혈금 혈금 치뜨고 사지가 떨고 하는 증상은 스트렙트 마이싱에 인한 부작용으로 기히 가할 것이나 本屍가 금성사를 가져오지 않았든 만치 속크에서 오는 신체적 현상은 부검시 보지 못했다. 本屍가 급성속사가 아니고 주사후 24 시간 생존 하였는 만치 스트렙트 마이싱에서 오는 부작용이라 하더라도 本屍가 건강체였드라면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려한다. 즉 환언하던 결핵성으로 인하여 영양상태나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저서 자체의 저항력이 약하여 저서 스트렙트 마이싱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본 부작용에 대하여 本屍가 회복 즉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 아닌가 사려한다는 뜻의 기재.

2) 김정혜의 母 박천수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및 당 공정에서의 진술증 주사전에 몸이 쇠약하였다. 주사를 맞고 경련을 이르켰다는 뜻의 기재 및 진술등이 그 전부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위 蘇秉國작성의 감정서는 사망한 것이 아닌가 사려한다로 되어 일종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當公廷에 증인으로 출정하여 이 건 시주와 위 김정혜의 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무죄의 증거로서는

1) 기록 제176丁에 편철된 의사 변희락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면 직접 사인은 호흡중추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바이루스성 뇌막염, 선행사인은 폐결핵으로 되어 이 건 주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2) 當公廷에서의 증인 김종철의 증언 중 동인은 메리늘병원 소아과 의사트서 김정혜의 死亡 직접

의 주치의인데 동인의 死因은 위와 같은 바이러스성 뇌막염이고 메리놀 병원에서는 스트렙트 마이싱을 주사하였다는 진술부분이 있으며

3) 동인이 제출한 김정혜에 대한 진료 카드에도 스트렙트 마이싱을 주사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메리놀병원에서 스트렙트 마이싱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일으킨 김정혜에게 다시 동종 주사를 시주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곧 김정혜가 보건소에서 시주후 경련을 일으킨 것은 결코 이 전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란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감정인 정창수 및 이상극 작성의 감정서에도 역시 위 김정혜의 사인은 주사로 인한 속사가 아니라 뇌막염이라고 해박한 의학적 전문지식을 傾注하여 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전 스트렙트 마이싱의 시주와 그 사인과는 하등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5) 따라서 피고인 이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마땅히 刑訴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간호원의 주사 행위

이미 보도된 바 부산진 보건소 김모 간호원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는데 분개한 전국 6천여 간호원들은 3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주사행위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문제의 발단은 작년 5월 23일 동간호원이 주사한 4세의 결핵환자가 사망한데 있다. 검찰은 주치의의 지시 감독없이 시주하여 쇼크가 일어나게 했고 쇼크가 일어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구속하여 40여일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보석으로 나왔었다. 당시에 한때 전국 간호원들이 주사행위를 거부한 바 있거니와 이번에 실행이 구형된 것을 보고 다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김 간호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의사의 지시 감독없이 시주한 것은 아니다. 문제의 환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병자로 주2회 마이신 0.5g씩 시주하라는 처방이 내렸고 동간호원은 이처방에 따라 시주 하였다고 한다. 시주하는 현장에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견습생도 아닌 간호원이 의사의 입회가 있어야만 시주한다면 사실상 간호원의 필요성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시비가 한창이던 작년 9월 보사부는 「처방 지시하의 주사행위는 업무중의 진료 보조행위」라고 시달한바 있거니와 처방이 곧 지시요 감독이 아닌가. 더구나 부산진 보건소는 의사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간호원은 더욱 부족하여 하루 2~3백명의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고 한다. 일일이 의사 입회하에 주사할 수 있는가. 사리에도 어긋나고 실지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쇼크사에도 의문이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항생물질의 쇼크인 경우에는 최장 30분 이내에 사망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의 환자는 동 간호원으로부터 주사를 맞은 후에도 다른 병원에 다니다가 2일 후에 사망하였고 그 병원에서는 결핵성 뇌막염으로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전문가의 견해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망한 환자에 동정이 없을 수 없고 가족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법 또는 사리에 맞지 않은 일로 연약한 간호원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앞으로 공정한 판결이 내릴 것이지만 단약 동 간호원이 진실로 억울하였다면 1년에 걸쳐 그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조속한 심판을 바랄 뿐이다. <동아일보 사설 3월 7일>

성 명 서

본 협회는 1969년 8월 27일 성명서를 통하여 본 협회원 부산진구 보건소 김영자 간호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1. 간호원의 주사행위등 기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의한 진료보조행위가 현행법상 합법적임을 명백히 하는 유권해석을 보사당국은 시급히 내려줄것.

2. 동시에 보사당국은 의사처방에 의한 주사실시가 합법적임을 검찰당국에 즉각 통고하고 김영자 간호원을 하루 속히 무죄석방해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국회원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체의 주사실시를 전적으로 거부한바 있다. 그러나 보사당국이 간호원이 의사의 처방과 지시하에 시주하는 것은 의료법 제7조의 진료보조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주사등의 행위자체에 간호원의 과실이 없는한 합법적이며 간호원에 대하여는 법적책임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유권적 해석에 따라서 응당 김영자 간호원이 무죄석방될 것으로 믿고 모든 간호원들은 안심하고 간호업무에 전념하여 오던바 의외에도 지난 2월 23일 부산지법 법정 결심공판에서 관여검사는 "피고인이 의사처방에 따라서 스트렙트마이신 주사처치한 것에 대하여 간호원으로서의 진료보조 밖에 할 수 없는데도 의사의 일회성이 의료행위를 한것은 위법"이라고 논고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 받고 1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아직 유죄판결은 안되었다고 한지라도 이와같은 검찰의 구형사실로 보아서 간호원들의 주사행위가 완전한 법적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본회에서는 2월 26일 긴급상임이사회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간호행위의 법적보장을 받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첫째 간호행위가 완전히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둘째 김영자 간호원이 무죄석방될 때까지 계속 활동할 것과 전국 회원은 모든 의료 보건기관에서 의사처방에 의한 각종 진료보조 행위중 일체의 주사 실시는 1970년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전적으로 거부할 것을 성명한다.

1970년 2월 28일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간호행위 법적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성 명 서

본 협회는 2월 28일 간호원의 주사행위가 완전히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따라서 김영자 간호원이 무죄석방될 때까지 일체의 주사실시를 거부하기로 결의, 오늘까지 4일간 주사실시가 중단 되었읍니다. 그동안 본 협회는 수차 보건사회부를 방문하여 간호행위의 법적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 여론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연도공판이 9일로 연기 되었으므로 본협회 대표가 3월 6일 오전 10시 보건사회부장관과 직접 면담한 결과 장관께서는

첫째 먼저 간호원이 의사 처방에 의한 주사행위를 법적보장하에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 주실 것을 약속 하시고

둘째 의사의 처방에 의한 주사등 투약을 간호원이 실시한 경우 시행상 과오가 없을 때 간호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법무부 당국의 유권해석은 받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불행한 상태의 지속이 결과적으로 코로나방역등 시급한 국민 보건사업에 차질을 가져 올 것을 우려하고 또한 전국의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3월 9일 공정한 법적해석에 의해 판결이 내릴 것을 믿고 연도공판이 내릴 때까지 주사행위 거부는 일단 중단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협회에서는 공판결과를 주시할 것이며 계속 간호행위의 보장을 위한 완전한 법제화와 간호원들의 직권옹호를 위해 활동할 것을 성명합니다. 부득이 주사행위를 중지하여 잠시나마 환자들에게 고통을 드리고 사회에 불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본협회의 성명을 지지하여 주신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하여 보건 의료기관의 의료인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과 협회의 진정한 의사를 전달하여 주신 언론 보도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계속 성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기 1970년 3월 7일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간호행위 법적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